

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(2차)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와 (재)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 주도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경영 기업 육성하기 위한 「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3일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

사업개요

사 업 목 적	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대한 맞춤형 홍보물 지원으로 제품의 국·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기업성장 견인
지 원 대 상	○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(※대기업 제외)
지 원 규 모	○ 2개사 내외(기업지원금 최대 5백만원 이내/과제당) ※총사업비(100%) = 기업지원금(80%) + 기업부담금(20%) ※부가가치세 별도(신청기업 부담) ※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금은 차등지원 됨(신청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음)
지 원 분 야	○ SNS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지원 ○ 기업/제품 홍보를 위한 카달로그 제작 지원
사 업 기 간	○ 2024. 10월 ~ 11월 (※협약 시작일로부터 약 2개월)
공 고 기 간	○ 2024. 9. 05.(목) ~ 9. 30.(월). 16:00까지
접 수 기 간	○ 2024. 9. 05.(목) ~ 9. 30.(월), 16:00까지
신 청 방 법	○ 온라인(R&D종합정보시스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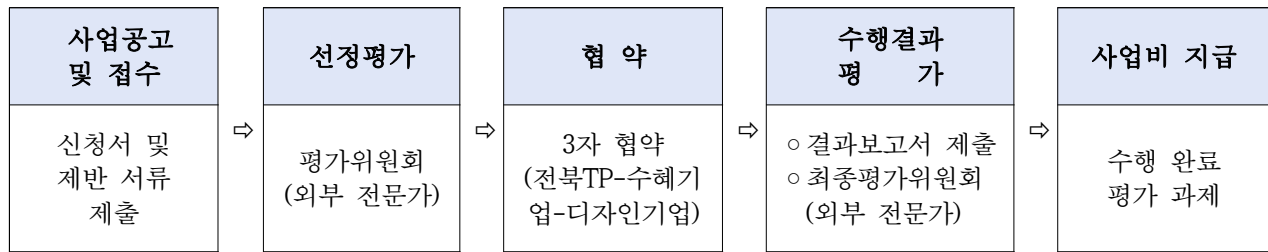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	
SNS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지원	◦ 지원규모: 6백만원 기업부담금 포함 ◦ 지원내용: SNS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	
	SNS 홍보영상 제작	◦ 제품리뷰 영상 ◦ 국문 또는 영문 제품 홍보영상 ◦ 3D 형식의 제품 상세소개 영상 등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 ◦ 일반적인 기업소개영상이 아닌 SNS홍보 트렌드(짧고 간결, 주목성이 큰)에 맞는 영상 제작(국내·외 SNS 마케팅 용)
	타겟광고	◦ 제작 영상을 활용하여 유튜브, 페이스북 등 SNS에 2~3개월 정도 유료 타겟 광고 실시
	◦ 지원조건 -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시나리오를 포함한 제작계획서 제출 - 타겟광고 미 실시한 경우 지원불가	
기업/제품 홍보를 위한 카다로그 제작 지원	◦ 지원한도: 기업 당 연간 1회 ◦ 지원규모: 6백만원 기업부담금 포함 - 기업/제품 홍보용 카다로그 디자인 (샘플제작 : 기업부담금 내 가능) - 기업/제품 웹 카다로그 디자인 ◦ 유의사항: 결과평가지 결과물 제출	

○ 지원방식

구분	세 부 내 용
지원조건	공고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지로 하는 수혜·디자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분야 중 1개 과제로 신청
컨소시엄 구 성	【신청기업(수혜기업)】(※ 상기 조건 모두 충족) -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기업 (※사업자등록증 기준) -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인 기업 (※사업자등록증 기준) -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상의 제조업(C10~C33)에 해당하는 기업 -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(※대기업 제외) -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(본사, 공장)을 둔 법인 및 개인 기업 - 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·운영
	【디자인기업】(※ 상기 조건 모두 충족) -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가 소재한 디자인기업 (※사업자등록증 기준) -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디자인기업 (※사업자등록증 기준) -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기업 - 디자인 전문인력이 3인 이상 -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등록 기준 -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인력 수에 포함 - 디자인 전문인력은 정규직이어야 함 (※4대 보험 가입 기준) -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충족 ※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은 디자인 관련 학위증명,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경력확인서,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(공고일 이후 발급본)만 가능(*디자인기업 등 재직증명서 불가*)

○ 추진절차



3

선정방법

- 평가방식: 서면평가(※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)
- 선정규모: 2개사
- 선정기준: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항목

평 가 항 목	세 부 내 용	배점
디자인 개발의 필요성	○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○ 디자인 개발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	20
디자인 개발의 실행 가능성	○ 디자인 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20
	○ 디자인 개발 비용의 적정성(사업비 예산 계획) ○ 디자인 개발 기간의 적정성	10
	○ 디자인기업의 수행능력 - 과제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디자인개발 역량 - 기업관리, 지원능력 등	20
성장가능성	○ 수해기업의 성장가능성,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	20
	○ 디자인 개발 결과에 따른 사업화 의지 및 발전 가능성 등	10
합 계		100

※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

4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공고기간: 2024. 9. 05.(목) ~ 2024. 9. 30.(목)
- 접수기간: 2024. 9. 05.(목) ~ 2024. 9. 30.(목), 16:00까지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
- 접 수 처: R&D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rnd.jbtp.or.kr>)
- 접 수 자: 수혜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접수하여야 함.

□ 제출서류

- 수혜기업이 R&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접수, 아래 파일 이름과 순서대로 ①공통서식 및 서류 ②별도서류 압축 파일 제출
- 관련서식은 R&D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rnd.jbtp.or.kr>) 또는 (재)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(<https://www.jbtp.or.kr>)에서 다운받아 작성

구 분			제 출 서 류	비고
공 통 사 항	1	서식 1호	·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	hwp 파일
	2	서식 2호	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※수혜기업, 디자인 기업 각각 작성)	PDF 파일 각 1부
	3	서식 3호	· 수혜기업 · 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	
	4	서식 4호	· 청렴서약서	
수 혜 기 업	5	소재지 증빙	· 사업자등록증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1부
	6	매출 증빙	· 재무제표('21년, '22년, '23년) ※재무상태표/손익계산서/현금흐름표/제조원가명세서/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	각 1부
	7	세금납부 증빙	·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각 1부
	8	상시 근로자 수 증빙	·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1부
디 자 인 기 업	9	소재지 증빙	· 사업자등록증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1부
	10	세금납부 증빙	·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각 1부
	11	상시 근로자 수 증빙	·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1부
	12	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	·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	1부
	13	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	·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(택1) (※공고일 이후 발급본) - 학위증명서(졸업증명서) 및 경력증명서 -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-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 *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조회 결과와 전문인력 수가 일치하여야 함 · 콘텐츠(영상) 요건 충족 관련 증명서	각 1부 (*전문인력 3인 이상)
	14	디자인개발 실적증명	· 지원분야 관련 디자인개발 실적증명	해당시

5

지원제외 및 취소 사항

□ 지원 제한대상

- 휴·폐업 기업
- 디자인기업과 수혜기업 간 대표, 이사 간 이해관계(가족, 친인척, 지분공유 등)인 경우
- 수혜기업이 개발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소재지 변경(지원금 미지급)
- 기 선정된 정부 및 타지자체 지원 과제를 제출한 경우
-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미납 또는 연체한 경우
- 개발수행능력 또는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
□ 지원취소

- 사업 추진 중이더라도 입찰불가, 지원제한에 해당하여 적발되었을 경우
- 협약서, 사업계획서, 관련 문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
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수혜기업과 디자인기업 간에 과업범위, 금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 신청, 목적 외 지원금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(지원금 환수)
- 디자인 개발과제를 타 기업에 외주 또는 재하청 의뢰한 기업

6

유의사항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접수 불가
- 신청서류는 관련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

-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학력 및 경력, 4대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 제외(서류 불충분 시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할 수 있음)
- 과제 수행중이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
 - 사업 추진 중이더라도 입찰불가, 지원제한에 해당하여 적발되었을 경우
 - 협약서, 사업계획서, 관련 문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
 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 -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
- 접수여부 확인, 제출서류 확인 등 사업신청 관련 사항은 신청기업에 책임이 있음(미확인으로 인해 서류가 최종 접수되지 않을 시 책임지지 않음)
- 과제선정 후 특정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 및 전북디자인센터의 타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(2020.1.1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(공공재정지급금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※ 재제부가금

- ① 허위청구 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 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 -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외 사용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
- 각종 유형의 제작물에는 [본 제작물은 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“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” 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음.(제작일자: 2024년 00월 00일)] 문구를 삽입하여 함.
-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(재무제표,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, 기타 우수사례 등)을 반드시 제

출하여야함.(불성실 제출시 차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
- 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 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 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지침」에 의거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지침」을 따름

7

문의 및 상담

소 속	(재)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		
직 위	책임연구원	성 명	이점윤
연 락 처	063-839-0203	이 메 일	lee1812@jbtp.or.kr